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3
----------	-------

발의연월일 : 2026. 8. 6.

발 의 자 : 이수진 · 유동수 · 남인순
전진숙 · 최혁진 · 김정호
백혜련 · 박희승 · 용혜인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숙박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할 것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가 취소한 숙박예약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u><신설></u>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숙박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할 것 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② ~ ⑧ (생략)	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가 취소한 숙박 예약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u><신설></u>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 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자 2. ~ 6. (생략) ③ ~ ⑤ (생략)	<u>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 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자</u> 1의2. 제4조제3항----- ----- ----- ----- -----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